

13

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(법 §36의5)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	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대상 확대 및 명확화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대상 주택)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<u>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 주택</u> ○ ‘<u>생애최초 취득 주택</u> 감면(§36의3)’ 규정 인용 ○ (감면내용) 취득세 100% (500만원 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1자녀당 1주택 감면 명확화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</u> ○ <u>감면 조문에서 직접 규정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택 정의, 산출세액 등 ○ (좌 동)
<input type="checkbox"/> 사후관리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후관리 합리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추징 요건) <u>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</u>에서 매각·증여 등 ○ (<u>추징배제</u>) <u>기존 거주자의 퇴거 지연 등으로 상시거주 지연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추징요건 합리화) <u>주택 취득일부터 3년 미만인 상태</u>에서 매각·증여 등(상시거주 요건 삭제) ○ (<u>추징배제 요건 삭제</u>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상시거주를 감면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, 추징배제 요건 불요

□ 개정내용

- 여전히 출산율이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출산율 제고,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 지원 등을 위하여 감면 연장 및 재설계